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21. 7. 23.>

[]먹는샘물 []먹는염지하수 []수처리제 []제조업 []수입판매업 []유통전문판매업 []허가신청서 []등록신청서 []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: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: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: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: 7일

신청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생년월일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)	전화번호

상호		영업의 종류
제조공장(영업소)소재지	(전화번호:)	
제품명		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.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(평면도를 포함합니다) 나. 제조공정 설명서 다.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. 취수정설비명세서(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) 마. 취수정 형성상태(形成狀態)를 촬영한 텔레비전-카메라 검층(檢層) 필름 바. 배수시설 명세서(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) 사.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(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)	2.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.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(평면도를 포함합니다) 나.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	수수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: 50,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:30,000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: 50,000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: 30,000원
	3.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. 사업계획서(수입처를 포함합니다) 나. 보관시설명세서 다. 원수가 법 제3조의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	4.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. 사업계획서(제조자를 포함합니다) 나. 보관시설명세서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5호나목3)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토	→	현지확인	→	결재	→	허가증 ·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
신청인		시 · 도		시 · 도		시 · 도		시 · 도		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